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 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

최은미*

- I. 서론
-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III. 전후 미국 외교정책의 형성
- IV. 미국의 전후처리 정책 비교 및 분석
- V. 결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새롭게 형성된 국제 사회로의 복귀라는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전후를 맞이하였다. 전후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재등장하여, 아시아와 유럽 내 중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역 내 위상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이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유럽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계속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으로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은 그들의 과거사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양국의 전후처리 과정의 차이에서 나타났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후질서 수립 초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파하며, Kegley and Wittkopf의 '갈때기 모델'과 강대국 수에 의한 약소국 지배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미국은 전략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유로 독일과 일본을 지역거점국가로 설정하여 유럽에서는 다자주의를, 아시아에서는 양자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간 배상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독일, 일본, 전후처리, 전범처리, 전후배상, 미국외교정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I. 서론

20세기 가장 끔찍했던 양차대전과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냉전이 종결되고, 인류는 ‘자유’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우리는 열전[熱戰]과 냉전[冷戰]의 시기를 지나 ‘미결의 전후처리’를 둘러싼 또 다른 형태의 전쟁에 휘말려 있다. 즉, 20세기의 전쟁은 끝났지만, 21세기의 ‘기억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전쟁의 후유증과 상흔, 그리고 미흡한 전쟁의 뒤처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고, 올바른 ‘현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나간 ‘역사’와 ‘과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영토분쟁, 그리고 식민지 시기의 배상과 보상의 문제 등 20세기 종료된 전쟁의 미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전쟁을 경험했던 유럽 지역 내에서 동일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은 전범국으로서 과거사 청산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던 독일과 일본의 전후인식과 태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후,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로의 복귀라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전후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동서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각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지정학적 거점지역으로 재평가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양국은 군국주의적인 구체제를 타파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을 수행하였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유럽과 아시아내의 중심국가로 대두되었다(이원택 2002, 5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역 내 위상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은 과거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유럽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계속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으로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유럽에서는 협력과 통합을, 아시아에서는 대립과 분쟁을 양산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전후인식 및 책임의 차이가 전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한 양 국가의 전후처리 과정의 차이에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후 질서 수립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Kegley and Wittkopf(1996)의 ‘갈때기 모델’을 통해 미국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고찰 해 본 후,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후처리¹⁾ 과정 중 타국에 대한 전쟁 책임과 자국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범자의 처벌 및 국가 간 배상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외교정책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기존 연구 분석

먼저 전후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버거(Berger 1993)는, 전후 독일과 일본의 인식의 차이가 생겨난 원인을 양국의 전전 및 전후 상황의 3가지 차이점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의 본질적인 차이,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발발 상황의 차이, 그리고 전후 일본의 구지도자들이

1) 흔히 전후처리 과정이란, 강화조약의 체결, 전범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조치, 그리고 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일컫는다(이원덕 2002, 549).

독일에 비하여 그들의 권력의 지위로의 복귀 혹은 유지가 훨씬 더 많았던 점이 전후인식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한다. 한편, 베네딕트(Benedict 1989)는, 문화 유형론적 접근으로 독일과 일본의 전후인식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는 서양의 '죄의 문화'와 일본의 '수치의 문화'의 대립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인식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야마구치 야스시(山口定 2000)는, 4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첫째, 전후 광범한 일본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 의식, 둘째, 미국의 점령 정책과 냉전의 영향, 셋째, 고도 경제 성장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 197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 생겨난 상황, 넷째, 보수당, 즉 자유민주당의 일당 우위 체제의 지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전후인식이 독일과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전범처리 및 전후배상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이원덕(2002)은 배상의 종류 및 그 진행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오늘날 유럽공동체 속에서 독일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전후처리를 만족스럽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후처리 정책은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경험한 아시아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토 다케오(佐藤健生 1997)는 독일과 일본의 근원적 차이를 통해 전후처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양국의 지리적 위치와 이웃나라로부터의 침략 등 역사적 배경이 전후, 독일과 일본의 상황적 차이-항복조건과 강화조약, 국경의 확정, 전범자의 처벌, 배상과 보상, 패전국의 점령-를 가져왔으며, 이것이 다시 양자간 전후처리의 차이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연구²⁾는 주로 독일과 일본, 각각의 전후처리 및 전쟁 책임에 대한 연구이다. 박원순(1996)은 동경전범재판의 준비 단

계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그 한계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였고, 전후 배상정책과 그 실체에 관해 전후 연합국, 식민지, 점령국에 대한 배상을 비교·연구하였다(박원순 1995b). 한편, 타카하시 테즈야(1999)는, 오늘날 자유주의 사관과 패전후론의 경향을 지닌 일본의 모습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전후 세대의 전후책임에 관해 논하였으며, 서경식과 함께한 글(2002)에서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에 대해 대담 형식을 통해 오늘날 일본의 전쟁 책임이 어떻게 기억되고, 이것이 일본의 우경화를 어떻게 부추기는가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편, 전범 재판에 대한 연구로, 송충기(2000)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을 비교·연구하였으며, 장수한(1994)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서독의 자본주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외 재판기록으로도 많은 자료가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이원덕 2002). 더욱이 현존하는 대부분의 비교 연구들은 독일과 일본에 원천적으로 형성된 전후인식의 차이를 규명한다. 따라서 전후인식 차이가 전후책임의 차이를, 전후책임의 차이가 전후배상의 차이를, 그리고 이러한 전후 배상의 차이가 각 국 국민들의 전후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순환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주권국으로서 입지를 갖기 전까지, 독일과 일본은

2) 그 외 비교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佐藤健生, “ドイツの戦後補償は日本の規範か,” 『世界』 1991年2月號, 大嶽秀夫, 『アテナウアーと吉田茂』(中央公論者 1986), 大嶽秀夫, 『一つの戦後ドイツと日本』(日本放送出版協會 1992)

3) 독일어 본으로 Der Nürnberg Prozess gegen die Hauptkriegsverbrecher vom 14. November 1945-1. Oktober 1946. 총 23권이 있고, 테일러(Telford Taylor)가 저술한 *The Anatomy of the Nuremberg Trails*(New York, 1992), Bradley F. Smith의 *Reaching Judgement at Nuremberg*(N.Y., 1977), 그리고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2000)의 원작이었던 Joseph E. Persico, *Nuremberg: infamy on trial*(New York, 1994)등이 있다. 이 외에도 중요 논문으로, Lothar Gruchmann, “Das Urteil von Nürnberg nach 22 Jahren,” in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16(1968, 385-389), Reinhard Merkel, “Nürnberg 1945, Militärtribunal. Grundlagen, Probleme, Folgen,” in *Merkur* 50(1995, 918-936) 등이 있다(송충기 2002).

패전국으로서 주체적인 전후처리를 할 수 없었고,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양국이 전범처리 및 전후배상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승전국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절대적 강자로서 군림하게 된 미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요소를 지나치게 당연시 한 나머지 오히려 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또한, 양국의 전후처리 및 전후인식, 전후책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전쟁 발발 이전의 근원적 요인, 혹은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한 이후에서 찾음으로써,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스스로 전후처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기적 간극을 결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외부적 요인으로 미국의 역할이 양국의 전후처리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⁴⁾

2.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Kegley and Wittkopf의 ‘갈때기 모델’과 행위자 수에 의한 강대국 외교정책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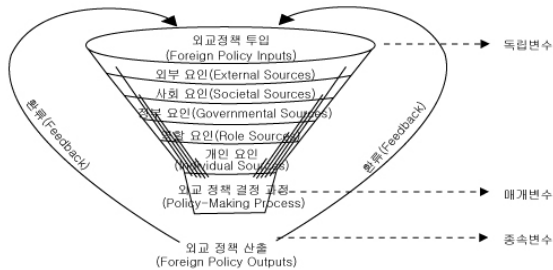
(1) Kegley and Wittkopf의 ‘갈때기 모델’

본 논문에서는 미국외교정책 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모델⁵⁾ 중에서 ‘투입-산출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외교정책 결정요인을 로즈노(Rosenau 1971)가 분류한 5개의 분석의 차원⁶⁾을 통해 알아보

-
- 4)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양국의 전후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미국의 점령정책에 있다고 보고, 이를 초점으로 맞춘 문헌으로는 이안 부루마(Ian Buruma 2002)의 『The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이 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대조적인 전후 태도는 미국의 점령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역사적, 정치적 시각으로 의문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하나, 현장답사와 인터뷰, 예술작품 분석 등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을 통해 논의를 전개해 나간 본 논문과 차이점을 지닌다.
- 5) 이 외에도 미국외교정책분석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체계적 접근, 합리적 행위자 모델, 집단사고모델, 정부정치모델, 조직과정 모델, 대통령 정치 모델과 관료정치 모델 등이 있다.

고자 한다.

로즈노(Rosenau 1980)는 일반적으로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원인적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외부요인(External Source), 사회요인(Social Source), 정부요인(Governmental Source), 역할요인(Role Source), 개인요인(Individual Source)의 5가지 요인을 분류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은 투입과정에서 정책적 변수들이 되며, 나아가 미국외교정책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아래의 ‘깔때기 모델’을 통해 보다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Kegley and Wittkopf 1996, 14).



출처 :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 : pattern and Process* (New York L St. Martin's Press, 5th ed., 1996), p. 14

<그림 1> 투입-산출의 깔때기 모델로 본 미국외교정책의 형성

먼저, 외부요인은 국제체제의 속성 및 그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의 모든 관점들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건지우는 일체의 사건들을 포함하며, 외교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인 실체들’(Geographical realities)과 가상적인 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적 도전도 포함한다(Kegley and Wittkopf 1996, 129).

6) 분석의 차원이란, 여러 변수를 그 단위에 따라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1962년 싱어(Singer)가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요인은 국가가 외부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국가 내부에 있는 정치체제의 비정부적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혹은 ‘국가적 단결 및 통합의 정도’, ‘산업화의 정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치 및 신념, 그리고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여론 등이 그 예이다.

정부요인은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정책을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정부의 구조이다. 즉, 행정부와 의회(입법부)와의 관계가 미국 외교정책에 주는 영향력을 말한다(Rosenau 1980, 128). 이는 미국이 국외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그 속도를 제한하거나, 급격한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요인은 정책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태와 자신들의 자리가 주는 법적·규범적 가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결정자의 자리는 그들의 행태를 본질적으로 조건지우기 때문에 산출물로서의 정책은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개인보다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어진 역할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

마지막으로 개인요인은 정책결정자 개인에 관련된 다각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그의 가치관, 재능, 과거의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정책을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된다(Rosenau 1980, 128). 미국의 경우,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령 개인의 영향이 크고, 따라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5가지 요인은 투입과정에서 미국외교정책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은 스스로 산출(output)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하며, 각 카테고리들은 서로 관계되어져 집단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각각의 정책결정은 갈때기 내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인과 관계적 사건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갈때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며, 다수의 혼합된 원인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

(2) 행위자 수에 의한 강대국 외교정책의 형성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을 할 때, 지역 내 고려해야 할 타 국가들이 많은 경우, 외교정책결정은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정책결정의 경우,⁷⁾ 지역 내 패권적 지위를 점유한 강대국은 타 국가들과 국제질서의 이해관계 속에서 첫째, 일반적 세력균형의 유지, 둘째, 다른 나라들과 관계 내 위기 회피 및 통제, 셋째, 전쟁방지, 넷째, 지역 단위에서 패권적 영향력 활용, 다섯째, 다른 나라의 세력권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행위, 즉, 강대국간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리 등을 고려한다(Wallerstein 1984, 207).

이러한 강대국 수에 의한 외교정책은, 정책의 결과에 피행위자의 어떠한 의사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을 때,⁸⁾ 피행위

7)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는 각 개념을 정의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인 기준 설정과 각 개념의 정의를 규정하는 변수들의 다양성 때문이다(이석호 1992, 516; 백성호 2003). 하지만 이를 패권의 개념과 연관시켜 본다면, 강대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문화 분야 등에서 자신의 규칙, 제도, 규범 등을 강요할 수 있는 국가이며(Wallerstein 1984, 44), 약소국은 자국의 능력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 제도, 과정 등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되는 국가를 의미한다(하용출, 박정원 1998, 21-23).

8)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약소국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많은 부분에서 강대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지만, 이는 약소국의 국내정치상황 및 정치체제에 기반을 둔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행위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패권의 개념과 연관시켜 강대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문화 분야 등에서 자신의 규칙, 제도, 규범 등을 강요할 수 있는 국가”이며, 약소국은 “자국의 능력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의 지원 등에 의존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식되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양국은 패전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강대국의 위치에서 양 국가에 전후질서 수립을 위해 내린 정책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독일과 일본 내의 국내적 상황이 연합국 정책결정자들에게 고려되었을 수는 있지만, 독일과 일본이 자국의 목소리를 내어 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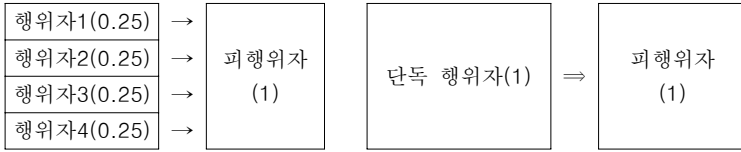
자가 받는 정책의 영향력은 실질적 행위자⁹⁾의 수에 의하여 나누어지며, 각 국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가치를 상대국가와의 협상을 통한 이해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된다.

(전제: 정책의 결과에 피행위자의 어떠한 의사도 반영되지 않는다)
 “피행위자에 대한 각 행위자의 영향력(Y)
 = 전체 영향력(1) / 실질적 행위자의 수(X)”
 (0.25) = (1) / (4)

따라서 수학적 차원으로, “피행위자에 대한 각 행위자의 영향력(Y)=전체 영향력(1)/실질적 행위자의 수(X)” 즉, (0.25)=(1)/(4)라고 볼 때, 동등한 위치에 있는 4개의 행위자가 주는 각각의 영향력(Y)은 1/4로 0.25가 된다. 실제로 이것은 수치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치로 표현하는 단순화를 시도한다면, <그림 2>와 같다. 각 행위자는 외교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고, 따라서 각 행위자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그 실질적 행위의 수치는 늘어날 수도, 혹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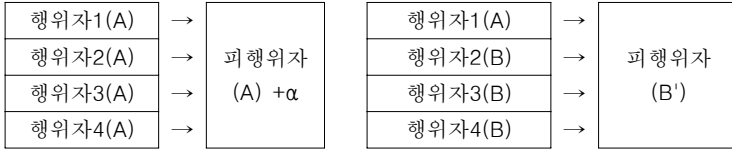
에서 사용되는 이론의 전제인 ‘정책의 결과에 피행위자의 어떠한 의사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자가 피행위자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행위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자국에 대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이후 설명할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 중, 일본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였으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타 연합국들은 제외되고, 결국 미국만이 전후처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실질적’ 행위자란,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피행위자와 이해관계를 지니며, 이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강한 국가를 지칭한다.



〈기본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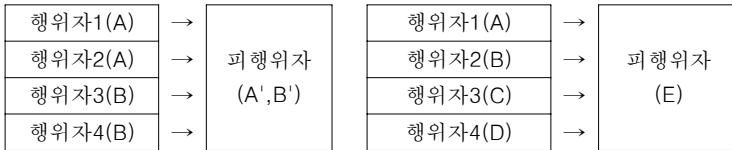
〈기본 모형 2〉



↑ + α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A, B, C, D =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목표

〈그림 2〉 행위자 수에 따른 정책결정 모델

먼저 각 행위자에게 우선시 되는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의 목표를 A, B, C, D라고 가정 해 보자. <사례 1>에서처럼, 행위자 1은 피행위자에게 A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 할 것이다. 행위자 2,3,4의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 목표가 행위자1과 같다면, 정책결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며, 행위자들은 본래의 목표, 그리고 타국과의 협력관계 달성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얻는다. 더불어 피행위자에게 가해지는 영향력은 '+ α '의 효과로 더욱 극대화되어, '1+ α ', 즉, 전체의 합 이상이 될 수 있다.

<사례 2>의 경우, 행위자 1은 자국이 우선시하는 정책 목표와 행위자 2,3,4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본래 목표를 축소시킨다.

이는 행위자 1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피행위자 ‘자체에 가하는 영향력’이 아닌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피행위자에게 가하는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위자 1의 영향력은 0.25미만으로 줄어들고, 자신의 목표를 초기만큼 달성하지는 못하나, 다른 행위자들과 협조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정책 실패가 아닌 정책 조율의 측면으로 스스로의 합리적인 선택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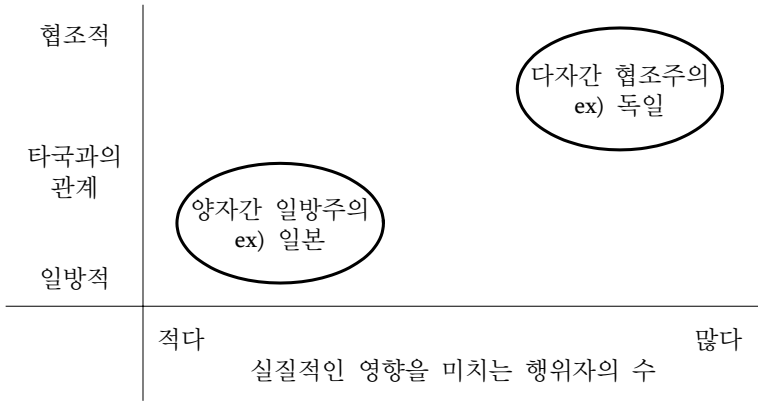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례 3>의 경우, 행위자 간 부합되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행위자들은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는 또 다른 행위자와 동맹관계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 간 분열이 생길 우려도 있지만,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모두 피행위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협상의 본질을 잊지 않기 때문에, 타협과 설득으로 협상에 임한다. 이 때, 행위자 각각의 영향력은 0.25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동등한 위상의 행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얻고, 본래의 목적을 수정한 A'과 B'의 결과를 얻었으므로 만족한다. 또한 행위자 1,2와 3,4간에는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 4>의 경우, 행위자들은 서로 모두 다른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협상은 난항을 겪는다. 하지만 행위자들은 타 행위자들과의 협력관계가 피행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보다도 우선한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협상이 진행된다. 이 경우, 행위자 1,2,3,4의 목표인 A, B, C, D가 아닌 새로운 E라는 정책이 피행위자에게 결정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자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한다.

한편, 행위자의 수가 적은 경우, -특히,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수가 1개국일 경우- 행위자는 정책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타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단독 행위자는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과 공동의 이익보다 자국의 가치와 제도,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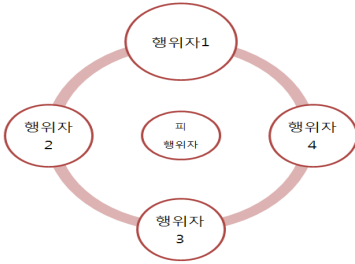
고 국내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방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백창재 2003, 119).

따라서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가 많고, 타협과 협력을 통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경우,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은, ‘다자간 협조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고려해야 할 행위자 수가 적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목표를 관철시키기가 쉬울 경우는, ‘양자간 일방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림 3> 행위자의 수와 타국과의 관계 따른 외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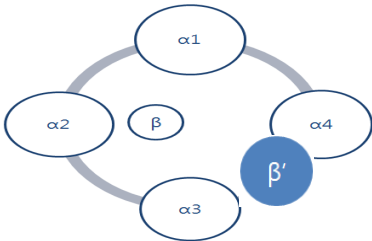
한편, 다자간 협조주의적 관계에서 타행위자의 우선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결정자들은 피행위자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그림 4>과 같은 질서를 구축한다. 각 행위자(a)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피행위자(β)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다. 또한, 양자간 일방주의적 관계에서, 절대적 권한을 지닌 단독 행위자는 피행위자와의 관계에 있어 <그림 5>의 질서를 구축한다. 그림에서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절대적 행위자(a)의 정책결정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행위자(β)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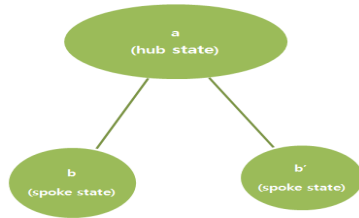
〈그림 4〉 다수행위자의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결정



〈그림 5〉 단독행위자의 피행위자에 대한 정책결정



〈그림 6〉 다수행위자의 둘 이상의 피행위자에 대한 문제해결



〈그림 7〉 단독행위자의 둘 이상의 피행위자에 대한 문제해결

한편, 피행위자(β)와 연루된 또 다른 피행위자(β')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다자간 협조주의에서는, <그림 6>와 같이 의사결정권이 없는 피행위자(β)는 다른 피행위자(β')와의 문제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양자간 일방주의에서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피행위자(β)와 관련된 또 다른 피행위자(β')간의 문제 발생 시, 지역 내 유일한 행위자(a)는, 지역 내 지배적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그림 7>에서처럼 (β)와 (β')간의 문제는 양국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a)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내 유일 무이한 행위자(a)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해결점이 모색된다.

이러한 모형을 Pangestu(2002)는,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hub and spoke system)이라고 칭하였다.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hub and spoke system)이란, A, B, C라는 3개의 국가가 있을 때, B국과 C국의 동의 없이 A국이 B국과 C국에 관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A국은 허브국(hub state)이 되며, B국과 C국은 스포크국(spoke states)국이 되는 체제이다(Im 2008). 이와 같은 구조에서 행위자(강대국)는 피행위자(약소국)에 대해 자국에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하며,¹⁰⁾ 또 다른 피행위자(또 다른 약소국)의 문제 역시 이러한 체제 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Ⅲ. 전후 미국 외교정책의 형성

1. 전후 미국의 대유럽 정책과 독일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전후 질서 구축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였다. 즉, 유럽에는 ‘다자간 협조주의’ 정책을, 아시아에는 ‘양자간 일방주의’ 정책을 취하였다(Hemmer·Katzenstein 2002, 583-584; 다키다 겐찌 2003, 334).

먼저 미국이 대유럽 정책에 있어서 ‘다자간 협조주의’ 외교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타 연합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다. 비록 전쟁 후

10) 일반적으로 허브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여도 스포크국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상정한 전제에 의하면, 허브국(강대국)은 스포크국(약소국)에 대해 그들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되,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내림을 알 수 있다.

피폐화 되었지만,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지역 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Hemmer·Katzenstein 2002, 583-584; Katzenstein, 2005).

이를 앞서 설명한 깔때기 모델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 미국의 대유럽 외교정책은 외부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¹¹⁾ 독일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은 외부요인으로서, 유럽체제의 속성¹²⁾과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행위자들을 고려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전후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하게 되는 ‘소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요인으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향을 들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후 국제정치질서가 강대국 간의 협력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자신의 세력권을 확보하여 그 속에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세력권을 상호 교류하는 세계를 구상하였던 것이다(김일수 2006, 5). 그리고 이후, 대통령직을 계승한 트루먼은 안정된 전후평화와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보전시킬 수 있도록 한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또한, 솔직하고, 정직하며, 단호하며, 완고한 성격의 트루먼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밝히며, 증폭되어가는 미소간의 의구심 속에서도 소련에 대한 합의를 얻고자 노력하였다(Dougherty·Pfaltzgraff, Jr. 1997, 69-87). 이와 같은 유럽의 체제

-
- 11)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외부요인, 사회요인, 정부요인, 역할요인, 개인요인-은 서로 관계되어지고, 집단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5가지 요인들이 언제나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각 요인들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개인들 등의 다양한 조건과 여건들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김의곤 2001, 63).
 - 12) 19C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3개국 이상의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외교의 형태가 발달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한 국가가 유럽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는 과정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박준영 2005, 81-83).

적 속성(외부요인), 초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소적 성향(개인요인) 및 전임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고자 한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역할요인), 그리고 전쟁 후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 여론(사회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은 대유럽 정책에 있어 다극 체제를 수립하게 된다(Weber·Steve 1991; 1993; Ruggie 1993, 233-292). 즉, 유럽에서의 다자주의 정책은 미국의 세계모니를 위한 편리한 수단이었고, 미국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계질서였다(Ruggie 1993, 3-47; 1994, 561-565).

2.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

한편, 미국은 일본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면서, ‘양자 간 일방주의’에 의거한 정책을 채택하였다(Hemmer·Katzenstein 2002, 575-607; 이해숙 2004, 11). 아시아 지역의 전후 질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은 그 이해관계가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처리 및 아시아 지역 내 전후처리 및 배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진행 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의 점령체제 하에서 미국이 정하는 바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을 앞서 설명한 깔때기 모델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는 대유럽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영국과 소련의 군사적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다(차상철 2002).¹³⁾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경우와 달리- 아시아 전후질

13) 당시 주요 강대국으로는 영국, 중국, 소련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의 아시아 지역의 이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치중 해 있었다. 따라서 전후 처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유럽전장에 몰두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본 점령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Iriye 1977, 388-394). 중국은 초기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담당할 지역강대국으로 인정받았지만, 내전과 취약한 군사력으로 인해 미국이 희망한 군사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 또한 소련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

서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관련 국가들이 적었고, 자국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전후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개인요인으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세계관과 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찍이 태평양과 극동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그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 원칙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이의 부활을 위해 상호의존 시대에 미국의 지위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강성학 1997). 따라서 외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아시아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지역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하였다(김일수 2006, 20). 그러나 소련과의 협조에 노력해 오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전후세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점점 명확히 내보였다. 집권 초기, 트루먼은 전임자의 정책의 연속성을 견지하고자 하였다(Dougherty·Pfaltzgraff, Jr. 1997, 79). 하지만 소련의 비타협적 자세에 직면한 후, 미국은 대소련 봉쇄전략¹⁴⁾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행정부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인 영향력 성취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점령은 독

대상이었지만,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은 상태였고, 전쟁이 조기 종결됨으로써 만주와 사할린에서의 특수한 이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그쳤다.

- 14) 1946년 소련과의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케넌(Kennan)에 의해 제시된 "봉쇄전략(strategy of containment)"을 따르기로 했다. 소련문제 전문가인 케넌은 소련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필연적 적대관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은 자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목표의 일치를 인식할 수 없고, 소련의 외교정책 행태는 비밀성, 솔직성의 결여, 이중성, 깊은 의구심, 비우호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특징지었다. 또한, 전시의 파괴와 전후 소련사회의 고갈로 인하여 소련의 후진성 문제는 낙후된 많은 부문에서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였고, 공산당의 내부 위기감으로 장래 권력 이양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봄으로써, 소련 권력 체제의 불변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은 소련체제 내의 긴장감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련이 해체 혹은 이완되는 선택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Dougherty·Pfaltzgraff 1997, 93-95).

일과 같은 분할점령이어서는 안되며, 하나의 단일체에 의해 점령되어야 하고, 점령 형태는 연합국 점령 형태를 취하더라도 미국의 우월적인 영향력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일본점령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명확히 언급하였다(Iriye 1977, 390-392).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일한 이해관계국,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외부요인)과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 개인의 성향(개인요인),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했던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결정(역할요인), 미행정부의 일본에서의 단독점령 주장(정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은 일본에 대해 ‘양자간 일방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극동 지역에서의 우위권을 점하고자 하였다.

IV. 미국의 전후처리 정책 비교 및 분석

- 전범재판과 국가 간 배상을 중심으로 -

1. 전범재판

(1)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1945.11.14 ~ 1946.10.1)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연합국 수뇌부들은 국제전범재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45년 6월말부터 전범처리에 관한 회담을 열어 1945년 8월 “유럽 주축국 주요 전범의 추적과 처벌에 관한 협정” 및 “국제 군사재판소 지위”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비로소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과 후속재판, 각 연합국의 군법/특별재판소에 의한 기타 재판, 그리고 뒤늦게 시작된 독일 사법부에 의한 나치 범죄 추적과 재판 등이 열리게 되었다(이진모 1999, 63).

그 결과, 24명의 피고인이 3가지 범죄혐의, 즉, ‘평화를 해친

범죄',¹⁵⁾ '전쟁범죄',¹⁶⁾ '반인륜범죄'¹⁷⁾로 기소되었다. 전범은 개인 자격뿐만 아니라 내각, 나치당 지도부, SA, 보안성, 비밀경찰, SS, 합동참모본부 및 최고사령부의 구성원 자격으로도 기소되었다(권형진 2005, 295). 전 세계에 나치정권의 잔악성과 전쟁 발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연합국에 의해 주도된 재판의 결과, 1946년 10월에는 나치의 핵심인물이었던 24명에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이 연기된 2명을 제외하고, 교수형 12명, 종신형 3명, 20년 형 2명, 15년 형 1명, 10년 형 1명, 무죄 3명이 선고되었다.

한편, 이러한 나치 수뇌부를 피고인으로 한 전범재판 이후에도, 미국의 주도로 나치의 법률가, 사업가, 의사집단, 국방부 엘리트 장교, 외교관 및 공무원을 피고인으로 한 모두 12개의 후속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 소련에서의 독자적인 전범재판과 구독일 점령지역에서 독자적인 전범재판이 진행되었다(양천수 2006, 182). 그 결과, 미군정 지역에서는 모두 1,941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51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가운데 324명이 사형을, 247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군정 지역에서는 총 1,985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가운데 240명이 사형을, 프랑스 지역에서는 2,107명이 회부되어 10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소련점령지역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더 엄한 처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통계에 의하면, 1950년까지 13,53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송충기 2005, 224). 또한, 유태인 말살과 박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연합국은 '인도에 대한 죄'¹⁸⁾를 전쟁범죄로

15) 국제조약, 협약, 화약 등을 위반한 침략 전쟁, 혹은 그러한 전쟁을 계획, 예비, 개시 혹은 수행한 행위 그 자체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공동계획이나 음모에 참여한 행위
 16) 전쟁법률이나 전쟁관습을 위반한 행위
 17) 전쟁이전 혹은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 자행된 살해, 말살, 노예화, 추방 또는 다른 반인간적 행위
 18) 구체적으로 전쟁 중에 일어난 모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살인, 섬멸, 노예화, 강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였다. 재판에 회부된 총 177명 중 유죄판결을 받은 142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인도에 대한 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 도쿄전범재판 (1946.5 ~ 1948.12)

일본의 전범자 처벌을 위한 군사재판소의 설치 조치는 항복 직후 곧바로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27일 연합국으로 구성된 ‘극동 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와 항복문서의 실행을 위하여 ‘대일본 연합국 이사회(The Allied Council for Japan)’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연합국들은 대체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었다. 결국 일본점령정책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미국은 이 극동위원회와 연합군최고사령부 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본점령정책에 결정과 집행을 주도하였다(박원순 1995a, 87-88).

재판 결과, 장기간에 걸친 재판의 영향으로 판결 전에 사망한 2명과 정신장애로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7명 교수형, 16명 종신형, 2명 유기형이다. 하지만 2년 반의 심리를 거쳐 1948년 사형이 집행된 7명을 제외하고는, 이후 A급 전범 19명을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은 채 전원 석방해 버렸다. 그리고 전쟁 중에 시작된 냉전의 강화로 인해 미국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재판은 조기 종결되었다. 한편, B, C급 전범에 대해서는 ‘보통의 전쟁범죄’로서 다루어졌다. 그 결과 7개국에 의해 2,244건, 피고 5,700명이 심판대에 올랐으며, 사형 984명, 무기(종신)형 475명, 유기형 2,944명, 무죄 1,018명, 기소철회 및 공소기각 등이 279명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 이송 및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의거한 박해를 말한다.

한편, 전쟁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천황에 대한 공개재판은 오히려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¹⁹⁾ 나아가 점령 당국이 추진하는 개혁과 민주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천황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한상일 1997, 31-32), 아우슈비츠의 생체실험과 비견될만한 741부대의 범죄 또한 불문처리 되었다. 또한, 전쟁과 식민점령의 가혹한 정책에 관여하였던 수많은 책임자들이 대부분 면죄부를 받고, 이후 일본 건설의 주역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박원순 1995a, 78).

2. 국가 간 배상

(1) 독일의 국가 간 배상

일반적으로 전쟁에 의한 국가배상은 전쟁 종결 후 평화조약이나 배상협정 등의 국가 간 조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전후 독일은 패전 즉시 연합국에 의해 동서로 분할 점령되었고,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추진 주체인 독일제국 자체가 존속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강화조약에 기초한 배상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없는 채로 전승국의 배상요구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독일의 국가 간 배상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히로와타리 세이고 2000, 183-185).

첫째, 서방진영의 연합국에 대한 배상이다. 이는 런던채무협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채권국과 독일 사이에 1953년 2월에 체결

19) 전쟁 직후,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쇼와천황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기보다는 동정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황제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었다. 1945년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아사히(朝日)신문의 경우, 천황제의 존속을 바라는 입장이 78%, 요미우리(読売)신문의 경우, 95%였다(이상훈 2003, 497-498).

된 독일의 대외채무의 지불유예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독일의 교전국, 피점령국 및 그 국민의 전쟁에 기인한 독일에 대한 청구권의 심사는 배상문제의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한다.

둘째, 소련과 폴란드에 대한 배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2일, 포츠담 협정에서 소련이 소련 점령지역(동독)으로부터 배상징수를 행할 것과 그 징수분에서 폴란드에 대한 배상을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53년 8월 소련과 동독 정부 간에 배상면제 조약이 체결되었고, 소련은 동독을 최종적으로 배상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 폴란드도 이어서 독일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셋째, 독일의 구동맹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 대한 배상이다. 이들 국가는 1947년 2월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대국과의 평화조약에서 대독일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넷째, 오스트리아에 대한 배상이다.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는 나치 독일에 의한 오스트리아 합병 문제가 결부되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1년 11월에 체결된 크로나이츠 협정으로,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9,500만 마르크를 보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배상’이라기보다는 ‘나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의 대외적 성격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쟁 배상은 금전이 아니라 현물의 형태로 오직 소련에게만 지급되었고, 서방 연합국에게는 지불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처럼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파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셜 플랜을 통해 독일 경제는 신속히 회복되고, 서유럽에 통합될 수 있었다. 또한, 연합국들의 대독일 전쟁배상요구는 ‘지불 가능한 수준’의 것이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차 대전 이후에 경험하였던 전후처리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2) 일본의 국가 간 배상

대일배상의 특징은, 첫째, 징벌적인 거액의 배상이 배제되고, 패전국 일본에게 평화적 생활의 유지를 인정하며, 지불 가능한 범위의 최소한의 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현금 배상이 아닌 설비철거에 의한 실물배상 내지 역무배상을 기본으로 하였고, 셋째, 전승국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배상의 수여국과 일본의 교섭에 기초하여 총액 및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原朗 1993, 269-273). 강화조약 체결 시, 연합국 및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배상요구의 포기방침에 찬성하여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대일본 전후처리의 기본선은 미국에 의해 설정되었다(이원덕 2002, 550).

일본의 배상문제는 연합국에 대한 배상과 식민지 및 점령지 국가에 대한 배상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연합국에 대한 배상은, 초기에는 포츠담 선언과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²⁰⁾ 등에 기초하여 상당히 가혹하게 처리되었다. ‘비군사화’ 정책에 기초하여 군수산업의 완전한 파괴와 관련 산업의 삭감, 배상철거 공장의 지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30% 정도 중간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일본경제의 급속한 부흥요청에 따라 배상정책은 큰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주도로 행해진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협정에 기초한 배상채권국별 대일교섭이 진행되게 되었다(박원순 1995b, 240-264; 정인섭 1997, 393).

한편, 식민지 및 점령지 국가에 대한 배상은 <실질적 배상>과

20) 1945년 9월 22일,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이라는 문건은 배상 및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일본국이 보유하는 영역 외에 있는 일본국 재산을 관계 연합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인도하는 것, 둘째, 평화적인 일본경제 또는 점령군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현존 자본설비 및 시설을 인도하는 것. 더불어 일체의 식별 가능한 약탈재산은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반환한다(박원순 1995b, 243).

<준배상적 성격의 무상경제협력>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원덕 2002, 551-557). 이 국가들에 대한 배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그 향방이 정해졌다. 먼저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진 동남아4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에 대해 이루어진 배상은 같다.

최초로 배상 교섭을 개시한 것은 1951년 12월의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는 172억 달러의 전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7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배상 4억 달러 12년간 지불, 경제차관 4억 달러 20년간 지불 안이 합의되어 1958년에 평화조약 및 배상협정이 조인되고,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필리핀은 강화회의에서 가장 강경한 배상징수 입장을 견지하였다. 1952년 1월, 필리핀은 교섭을 개시하며, 80억 달러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배상 5억 5000만 달러, 경제협력 2억 5000만 달러 포함 8억 달러 20년 안을 정식 제안하여 이것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배상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배상액 중 5억 달러는 자본재, 5000만 달러는 역무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2000만 달러는 가공 역무²¹⁾로 결정되었다.

또한, 남베트남과의 배상교섭에 있어서 남베트남은 일본에게 애초 20억 달러의 전쟁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3900만 달러 5년간 지불, 차관 3년간 750만 달러로 협정이 체결되어 1960년 발효되었다. 한편, 북베트남은 1956년 8월과 1959년 5월에 배상 요구권을 유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와의 배상교섭을 살펴보면, 미얀마는 25억

21) 가공 역무는 일본에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소비재의 일부를 가공비만큼 싸게 매각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가공비분의 폐소화를 현금으로 획득하는 방식이다. 필리핀이 전쟁미망인과 고아에 대한 위로금으로 2000만 달러의 현금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현금배상의 색채가 표면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吉川洋子 1991).

달러의 전쟁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4억 달러 20년 지불안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양국은 1963년 1월, 무상경제협력 12년간 1억 4000만 달러, 통상차관 6년간 3000만 달러, 그리고 금후 배상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성립시켜 마침내 경제기술 협정이 서명됨으로써 배상교섭은 종결되었다.

한편, <준배상적 성격의 무상경제협력>의 경우, 강화에 참가하였으나, 대일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라오스,²²⁾ 캄보디아,²³⁾ 태국,²⁴⁾ 싱가포르²⁵⁾ 등의 국가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전쟁피해를 입었던 중국은 인민공화국의 승인문제에 관해 미국과 영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강화회의에 초대되지 못했으며, 결국 강화의 상대국 선택은 일본에게 맡겨졌다.

한편, 한국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반도의 남북한 정부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교회복은 당사자 간 직접협상에 맡겨졌다. 일본정부는 한국을 교섭의 상대로 하여 1951년부터 한일회담에 착수하였고, 결과적으로 7차에 걸

22) 라오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고, 1956년 12월에 배상청구권 포기를 통고하였으나, 일본은 비엔찬 상수도에 대해 10억 엔의 차관공여를 약속하고, 1958년 10월에 10억 엔의 경제기술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1959년 1월에 발효하였다.

23) 캄보디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고, 1954년 11월에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였으나, 1957년 11월에 3년간 15억 엔의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가 성립하여 경제기술협력 협정이 1959년 4월에 서명되어 7월에 발효되었다.

24) 태국은 1955년 7월, 전시 중 특별 엔에 관한 협정이 성립되었다. 전쟁 중 일본은 태국과 엔화 청산감정을 개설하여 현지통화를 조달하고 군수물자를 구입하였다. 이 청산감정의 차월 잔고가 바로 태국 특별 엔으로, 태국은 잔고지불을 요구하여 1955년 4월, 1954억 엔 상당의 영화 파운드를 5년간 지불하고 96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5)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보상 문제는 평화조약으로 해결이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67년 9월, 전시 중 중국인 집단 살해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양국에 각 29.4억 엔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조인하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이 액수에 상당하는 외항화물선 2척,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조선소가 제공되었다.

친 한일회담을 거쳐 1965년 12월에 10년간 배상이 아닌, 무상경제협력의 3억 달러, 기타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는 협정이 성립되었다(이원덕 2002, 551-557).

이상에서처럼 국가 간 배상에 있어서 연합국과 식민지 및 점령지의 대부분의 경우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교섭을 추진하였던 필리핀, 한국, 남베트남 등의 나라들에게는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친미 독재정권들이었다. 즉, 미국은 경우에 따라, 이들 국가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실 점령 직후 미국은 일본을 철저히 민주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배상방안을 구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안은 결국 미국의 점령경비 증대와 일본에 대한 경제 원조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이 배상을 지불함으로써 경제부흥이 늦어지는 것은, 미국의 대일원조를 오래 끌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담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배상정책에 미국은 자국에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관여를 했고, 결국 이것이 아시아 경시의 전후배상 처리가 되었다(우즈미 아이코 1997, 132-138).

3. 이론적 분석틀에 의한 미국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 정책

(1) 미국의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내 다른 정책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범재판과 국가 간 배상 역시 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독일에 대한 전범처리는 미국과 연합국들의 ‘다자간 협조주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점령국마다 독일의 장래와 관련된 전후처리 정책은 상이했지만, 전범처벌, 탈나치화, 재교육 및

민주화 등 적어도 독일의 과거를 청산하는 데 대한 입장은 종전 직후까지 유사했다(김세연 2001, 143). 특히, 전범처벌에 대한 각국의 목표는 동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실행은 원래의 목적 이상으로 철저하게 행해졌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처음부터 나치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을 통해 독일인과 전 세계에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에 진주한 연합국들은 비록 독일인들의 ‘집단 책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독일인들도 나치범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모든 독일인들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없었기에, ‘간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을 생각하였고, 더욱 철저하게 전쟁 책임을 물었다(송충기 2002). 이는 <그림 2>의 <사례 1>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다수의 행위자의 목표가 같을 경우, “+a”의 힘이 발휘되어 목표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전범재판에서의 전범자 처벌을 넘어서 나치 청산, 독일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국가 간 배상과는 다른 나치의 박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이처럼 독일의 전범재판은 주요 연합국이 모두 피해 국가였고, 재판에도 참여하였다. 그들은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통해 전범처리는 물론, 철저한 나치 숙청을 했다.

반면, 일본의 전범처리는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르게 되었다. 독일에 비해 일본의 전범자 처벌은 매우 관대하게 이루어졌고, 전쟁의 최종 책임자인 천황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면책되었다.²⁶⁾ 한편, 이러한 관대한 처분의 배후에는 동서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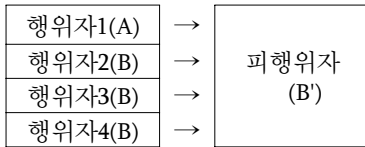
26) 총사령부는 일본에서 천황제가 가지는 기능적 역할,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본 내에 미국의 점령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천황제 존속을 결정하였다(FRUS 1945, 546-547).

이 있었다. 즉, 유럽의 전후처리를 둘러싸고 소련과의 대립이 첨예화 해 가자 미국은 일본에서 반공세력의 온존 및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대일점령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도쿄재판에서 기소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구미 연합국에 대한 전쟁행위와 관련한 범죄였다. 처벌을 받은 25명의 군인과 정치가의 주된 죄상은 대미 개전(介戰)이었으며,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완전히 배제되었는데, 이는 11개의 연합국으로 구성된 도쿄재판의 검찰진 가운데 식민지 종주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검찰진은 식민지 지배 그 자체의 시비론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일본의 조선지배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도쿄재판에서 일본의 조선지배가 단죄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됨에 따라, 일본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후인식 및 책임의식은 사죄 혹은 반성을 토대로 한 채 사라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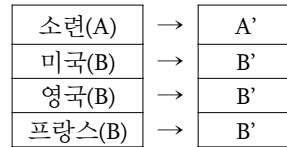
이처럼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일본의 도쿄재판은 그 시작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먼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은 연합국간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어 철저한 전범 재판과 전후 처리가 이루어진 반면, 도쿄재판에서는 미흡한 전범처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천황의 책임과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도쿄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미국의 천황 면책문제는 전후 책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체적인 전쟁 책임 의식의 형성, 즉 ‘과거 극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도에 대한 죄’의 경시는 식민지 국가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2) 독일과 일본의 국가 간 배상정책

독일의 배상 문제는, 2장의 대안적 이론으로서 제시한 <그림 2>의 변형된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즉, 행위자들의 목표가 다수의 일치(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독일 배상정책)와 그렇지 않은 경우(소련의 정책)로 분리되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행위자들(연합국)은 피행위자(독일)에게 타협과 대화를 통해 다수의 목표를 관철시킨다. 하지만 독일의 배상문제는, 행위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이에 각 행위자들은 독자적 행동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림 8> <그림 2>의
기본모형 <사례 2>



<그림 9> 독일사례에의 적용

따라서 연합국에 대한 독일의 배상 문제는 점령지역이 분할되면서, 점령당국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관할 지구에서 각 군정은 자국의 목표에 맞게 배상 정책에 착수하였다. 한편, 연합국 외 국가들에 대한 배상 문제의 경우는, 연합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미국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을 봉쇄시키기 위해 유럽 지역 내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NATO, CSCE, OECD 등의 기구 설립을 통해 지역 내 협력 체제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국가 간 배상은, 배상액의 수준이 1차 대전의 그것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독일을 유럽 지역 내로 다시 끌어들

여 유럽재건을 통한 부흥을 이루고자 한, ‘지불 가능한 수준’의 배상액 및 배상방식을 설정한 미국과 연합국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보상’의 관한 논의가 포함된다. 즉, 나치에 희생당한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의 배상액은 일본의 그것보다 현저히 많다. 이는 독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배상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배상시기가 유보 혹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배상이 일본의 배상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독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정책의 영향으로 국가 간 배상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단독, 간접 점령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간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산 아래 각 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가해자, 침략자의 입장이 아닌 전후 냉전의 대미 협력자의 입장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한 철저한 징벌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원덕 1997, 159).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패전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최소한으로 경감시켜 주었고,²⁷⁾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내려 주

27) 이는 다음 2가지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 배상의무의 최소화이다. 일본의 전쟁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를 규정한 강화조약 제14조 a)항에는 일본의 배상의무가 명기되었으나, 더불어 일본의 자원이 완전한 배상을 하기에는 현재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로서 첫째, 일본이 피해를 받은 국가의 희망에 의하여 의무배상을 행할 것과, 둘째, 연합국 내에 있는 일본의 모든 재산은 연합국이 몰수, 처분할 것이 있음이 규정되었다. b)항에서 상기의 두 사항을 제외하고 연합국은 모든 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이 선언되었다. 강화조약 제14조는 이처럼 일본의 배상의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일본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둘째, 일본침략의 최대 희생자인 중국과 한국(북한 포함)이 강화조약의 서명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침례화되는 동서 양진영의 대결구도

었다.²⁸⁾ 이처럼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일본의 배상의무가 상당히 경감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일본인의 전쟁책임 의식을 희박하게 만들었다(이원덕 1997, 159~162).

V. 결론

나치 독일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독일 유대인 협회는,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에게 2차 대전 중 독일이 유대인에게 행한 행위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독일이 진정으로 사죄했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은 패전 후, 약 933억 마르크를 배상했고, 21세기까지 총 1,238억 마르크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미 성공적으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신임을 얻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으로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으로 국가 간 배상은 끝났으나, 종군위안부, 강제 징병, 강제 노동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여전히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6,200억 엔의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나, 이는 전후독일 배상액의 1/8에

속에서 미국 진영의 적대국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1948년 정부수립 직후부터 대일 강화조약에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종적으로 거부되어 결국 한국은 강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되었다. 이 결과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는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이원덕 1997, 159-162).

- 28) 강화회의에 당시 일본의 수상으로 참가하여 조약의 최종적인 서명을 담당하였던 요시다 전권대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징벌적인 조항, 보복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복수의 조약이 아닌 화해와 신뢰의 문서이다.” 라고 연설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 아시아 각 피해국이 요청했던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의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후(戰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과 강대국 수에 의한 정책결정에 의한 분석틀을 통해, 이것이 양국의 전후처리 방침과 전범재판, 그리고 국가 간 배상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 해 보았다.

독일의 경우, 미국은 영국, 프랑스, 소련을 고려한 연합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다자간 협조주의’ 적 관계 속에서 전후질서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 목표를 고려해야만 했다. 연합국들의 대독일 정책은 상이하였지만, 전범처리와 배상에 관한 전후처리 목표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연합국들은 독일의 전쟁 재도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범을 철저하게 단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독일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을 유럽 질서에 재편입 시키기 위해 ‘지불 가능한 배상’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에 독일은 주변국의 의혹을 씻고 다시 서구의 가치규범과 경제 질서 및 민주주의 체제로 복귀할 수 있었다(김세연 2001, 130).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국은 간접적인 단독점령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합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방침을 고수하며 ‘양자간 일방주의’의 방침 아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후질서를 구상할 수 있었다. 초기 ‘민주화’, ‘비군사화’를 목표로 내건 미국은 냉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 걸고, 역코스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기 전까지 ‘민주주의 전파’의 사명을 띠고, 지역 내 전후질서를 수립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점령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도쿄전범재판에서 죄를 묻지 않았고, ‘인도에 대한 죄’, ‘화학전 및 생물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철저히 자국 이해

중심적인 전후처리를 하였다. 더불어 주변국에 대한 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배상의 직접적인 수혜국인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협정이 아닌, 냉전의 심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성장과 자국의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배상 수준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배상은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본은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인식조차 갖게 되었다.

이처럼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자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 내 질서를 다르게 형성하고, 이에 따라 다른 전후처리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진정한 의미의 전후 처리는, 2차 대전 직후 설정된 미국의 전후처리 방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논의들이 제기 하였던 인식론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 전전 그리고 전후 상황의 차이, 더불어 과거를 극복하고자 한 독일과 일본의 국내의 여론 및 시민단체의 동향까지도 함께 고려해야만 보다 올바른 문제의 해결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초기에 형성되었던 미국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 방침의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양국의 과거 인식 및 책임, 나아가 지역 내 통합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 협력, 그리고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투 고 일 : 2009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1월 17일]

[계재확정일 : 2010년 01월 17일]

참고문헌

- 강성학. 1997. “플라톤의 조선, 마키아벨리의 일본제국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정책.” 『IRI Review』 4(1).
- 김세연. 2001. “독일의 전후처리 연구.” 『인문사회과학논총』 8(1).
- 김의근. 2001. “미국 외교정책의 분석틀.”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 김일수. 2006. “F.D. 루즈벨트 대통령의 개입정책과 전후구상.” 『동서연구』 18(1).
- 다키다 겐찌. 2003. “다자주의의 재정의와 미국외교.” 『민주주의와 인권』 5(1).
- 박원순. 1995a. “동경재판의 시작과 끝.” 『근현대사강좌』 통권(7).
- _____. 1995b. “일본의 전후배상정책과 그 실제.”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서울: 아세아 문화사.
- _____. 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박준영. 2005. 『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 백성호. 2003. “강대국과 약소국간 안보동맹의 특성 고찰.” 『사회과학연구』 9 기획논문.
- 백창재. 2003. “미국 외교 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9(1).
- 사토 다케오. 1997. “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 비교.”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서울: 나남.
- 서경식·타카하시테츠야. 2002.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대화-』. 서울: 삼인.
- 송충기. 2002.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역사교육』 93.
- _____. 2002.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재판의 비교.” 역사학 국제회의 집행위원회.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학 국제회의 발표문, 2002 :역사 속의 한국과 세계』. 서울: 역사학국제회의집행위원회
- _____. 2005.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역사와 기억』. 서울: 푸른역사.
- 야마구치야스시. 2000. “두 개의 현대사-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서.” 『기억과 망각-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서울: 삼인.
- 우즈미 아이코. 1997. “일본의 전후처리와 아시아의 보상요구-일본의 전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새로운 만

- 남을 위한 역사인식』. 서울: 나남.
- 이상훈. 2003. “상징천황제의 딜레마.” 『일어일문학연구』 47(2).
- 이석호. 1992. “약소국 외교정책론.”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 이원덕. 1997.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하영선 저.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 인식』. 서울: 나남.
- _____. 2002. “전후처리의 일독 비교연구 서설.” 『사회과학연구』 15.
- 이진모. 1999. “전후 독일의 탈나치화와 과거청산-성과와 한계(1945-50).” 『독일연구』 5.
- 이혜숙. 2004. 『일본현대사의 이해 -전후 일본사회와 미국의 점령정책-』. 진주: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 장수한. 1994. “해방 50년 기념 기획: 전범 처리와 세계체제의 재편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서독의 자본주의.” 『역사비평』 가을호(28).
- 정인섭. 1997.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 상의 문제점-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차상철. 2002. “미국의 극동정책과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북미주학연구』 11.
- 하용출·박정원. 1998.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전논총』 4(1).
- 한상일. 1997. 『일본전후정치의 변동: 점령통치에서 새 체제의 모색까지』. 서울: 법문사.
- 히로와타리 세이고. 2000. “독일의 전후책임과 전후보상.” 『기억과 망각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서울: 삼인.
- Chales, W.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1996.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s and Proc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5th ed.
- Christopher, Hemmer, and Peter, J. Katzenstein. 2002.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3).
- Ian, Buruma. 2002. *The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Phoenix.
- (정용환 옮김.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독일인과 일본인의 전쟁 기억』. 서울: 한겨레 신문사.)
- Im, Hyug Baeg. 2008. “East Asian Regional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Obstacles, Opportunities and Future Prospects.” Beijing Forum 2008. “The Harmony of Civilization and Prosperity for All.”

- November 6-9, Lake View Hotel of Peking University, Beijing, China.
- Immanuel, M. Wallerstein.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 Economy : The State,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riye, Akira. 1977. "Continuities in US-Japanese Relations, 1941-1949."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Japan: University of Tokyo Press.
-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American Foreign Policy. Haper & Row, Publishers, INC.
- (이수형 역. 1997. 『미국 외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 James, N. Rosenau. 1971.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80.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revised and enlarged*. N.Y.: Nicholas Publishing.
- John, G. Ruggie. 1993.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Third Try at World Order? America and Multilateralism After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9(4).
- Pangetsu, Mari, and Sudarshan, Gooptu. 2002. "New Regionalism: Options for China and East Asia."
- Peter, J. Katzenstein. 2005. *A World of Regio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Ruth, Benedict. 1989.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Mass. : Houghton Mifflin.
- (김윤식 옮김. 2002. 『국화와 칼』. 서울: 을유문화사.)
- Thomas, U. Berger. 1993.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17(4).
- United Nations Information Organization. 1946. *Information Paper* no.1.
- Weber, Steve. 1991. *Multilateralism in NATO: Shaping the Postwar Balance of Power, 1945-196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____. 1993. "Shaping the Postwar Balance of Power: Multilateralism in NATO." John, G. Ruggie.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佐藤健生. 1991. "ドイツの戦後補償は日本の規範か." 『世界』

吉川洋子. 1991. 『日比賠償外交交渉の研究』. 草書房.

原朗. 1993. "戦争賠償問題とアジア" 岩波議座 『近代日本と脱植民地8
アジアの 冷戦と脱植民地化』. 岩波書店.

大嶽秀夫. 1986. 『アデナウアーと吉田茂』. 中央公論者.

大嶽秀夫. 1992. 『一つの戦後ドイツと日本』. 日本放送出版協会.

高橋哲哉. 1999. 『戦後責任論』. ぺりかん社.

(이규수 옮김. 2000.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기억의 정치, 망각의 윤리-』. 서울: 역사비평사.)

A Study on Liquidation of Germany and Japan by
America Foreign Policy
: The Case of “War Criminal” and “National Compensation”
after WWⅡ

CHOI Eun-Mi
Korea University

After WWⅡ, Germany and Japan had a same problem which is returning to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y have different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process. That is, Germany has tried to reconcile to neighboring states and has good relations with them while Japan hasn't. Moreover, the two criminals-Japan and Germany-have different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bout their past behavior. Finding the reasons, I focused the initial time when the war ended. Then, I analyze the process and result by using Kegley and Wittkopf's policy-making process and power countries' strategy. As the analysis, Germany and Japan were reevaluated as strategically, economically, and geopolitically important states by America which is the strongest country at that time. So, America set a different strategy to each country; multilateralism in Europe, bilateralism in East Asia. Then, it affects war criminal's trial, national compensation, and thoughts of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until these days.

Key Words : Germany, Japan, post-war reparation, post-war settlement,
war criminal treatment, American diplomatic policy